

#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- |  |  |
|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재정 : 2016. 3. 3.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1. 7. 30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8. 3. 1.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1. 9. 1.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0. 3. 13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2. 6. 1.  |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센터는 수원과학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설치목적)** 본 센터는 교육부 고시 제2021-33호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에 의거 설치, 체계적 현장실습학기제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(업무)** 본 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시행계획 수립, 현장실습학기제 평가 및 개선,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·관리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
2.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및 참여 신청, 접수 관리
3. 학생 참여 신청, 접수 관리
4.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
5.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
6.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관리
7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
8.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
9. 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10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
11. 그 밖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

## 제 2 장 조 직

**제5조(조직)** ① 본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둔다.

- ② 본 센터에는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- ③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6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총괄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7조(명칭)** 운영위원회는 수원과학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라 칭한다.

**제8조(목적)** 위원회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현장실습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9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장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되며, 간사를 1인 둔다.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.
-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**제10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11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2조(회의 및 의결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위원의 2분의 10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및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
- 2.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14조(운영세칙)**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제 4 장 재 정

제15조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 회계로 충당한다.

제16조(예산 및 결산) 본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해산) 본 센터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.

## 제 5 장 기 타

제18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정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7-1-17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